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30 선고 2018가단5497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2019. 7. 19.

판결 선고2019. 8. 30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,457,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9. 15.부터 2019. 7. 13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
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).

## 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2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**판사항병헌**

별지